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일시 | **2025년 4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

국회의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을)

주관

삼짇삼 리서치랩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CONTENTS

인사말 김 남 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	4
오 기 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을)	6

좌 장 채 이 배 소장 (삼점삼 리서치랩)

발 제 채 이 배 소장 (삼점삼 리서치랩)	9
--------------------------------------	---

토 론 김 선 택 회장 (한국납세자연맹)	23
안 기 종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31
한 민 희 팀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37
신 정 선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41



인사말



김 남 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오늘 "소득세법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자리에 함께해주신 삼점삼 리서치랩 채이배 소장님,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님,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님, 국세청 한민희 팀장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정선 부장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해주신 오기형 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소득공제 제도 가운데 여전히 미비한 사각지대에 주목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와 관련된 공제 기준의 불명확성과 제도 운영의 실질적 어려움을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세법의 조문을 다루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숙하게 고통을 분담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돌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세법은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소득 활동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였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문구는 정의가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고, 이로 인해 의료기관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기준에 편차가 발생하면서 납세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2025년 2월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판단 기준을 일부 구체화하고, 발급 주체를 의료기관장으로 명시되면서 형식적인 정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소득공제에 내재된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특히, 국민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즉, 중증질환자로 공적으로 인정받은 환자조차도—공제를 받기 위해 다시 의료기관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별도로 소명해야만 하는 구조는 제도적 불합리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1년 기준 약 244만 명의 산정특례 등록자 중 실제로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은 인원이 얼마인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적 질환 기준을 충족한 납세자가 제도 밖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을 가늠할 수 없으며, 공제 누락 규모나 제도 효과를 진단할 최소한의 행정 기반도 부재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공제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동일한 질환군이 서로 다른 법령 체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점 또한 큰 문제입니다. 납세자와 실무자가 각각의 조문을 순차적으로 추적해야 하며, 이로 인해 행정 부담과 적용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복잡함을 넘어 납세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단순히 조문 정비의 필요성을 넘어서,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납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개선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산정특례 대상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자동 연계, 공제 유형별 실태 분석 체계 구축, 명확한 운영 체계 구축 등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구조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본사회란, 아픔과 불편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존엄을 보장받는 사회입니다. 그 출발이 바로 제도의 문턱을 낮추는 일입니다. 중증질환으로 인한 불편함보다, 그 불편함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이 더 고통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모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제도 개선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시을) 김 남 희

인사말



오 기 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을)

안녕하십니까,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오기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희 의원님과 함께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주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채이배 삼점삼 리서치랩 소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라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평등주의와 함께 조세법의 기본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률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를 그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과 절차 및 그 법률효과를 규정한 법률규정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할 때에도 이를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헌재 1995. 2. 23. 93헌바48 등).

소득세법은 장애인 추가공제와 관련하여,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1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여(제107조 제1항 제3호), '어떤 사람이 추가공제 대상자가 될 것인지'를 결국 의료기관의 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그래서, 결국 환자가 어느 병원에 가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추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현행법령의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의 심도 깊은 논의와 통찰을 통해, 현행 조세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논의가 우리 조세제도 선진화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17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도봉구을) **오 기 형**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발 제

채 이 배 소장
(삼점삼 리서치랩)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 · 중증 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

채 이 배 소장 (삼짇삼 리서치랩)

1. 들어가며

‘중증환자’ 대상 조세 감면제도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중 하나로,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 요건에 포함된다. 그동안 장애인 소득공제에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으나, 2025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일부 범위가 구체화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동일한 기준을 참고하여 중증환자를 정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공제 기준의 불명확성과 적용의 일관성 결여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 더욱이 두 제도가 각각 별도로 중증환자를 정의하고 있어, 법령 체계가 불필요하게 복잡하고 분절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에 내재한 공제 기준의 불명확성과 운영 체계의 부재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령 및 운영 체계 정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기존 장애인 공제 제도의 구조와 운영상 한계¹⁾

장애인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²⁾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연간 200만 원의 추가공

1) 세법상 장애인 공제 알아보기(2023-04), 삼짇삼 블로그, 이수경

2) 본인 이외의 직계존속(증조부모, 조부모, 부모 등), 형제·자매,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위탁 아동 등의 부양가족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를 포함한다.

제를 허용한다(소득세법 제51조제1항제2호). 물론,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³⁾ 등)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공제 적용 대상은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되어 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이 중 ‘1호’와 ‘2호’는 각각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판단과 증명을 담당하고 있어, 공제 적용을 위한 행정 절차와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다. 반면, 기존의 4호는 법령상 판단 기준이나 책임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운영에 혼선을 초래해 왔다⁴⁾.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①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국세청 기본통칙⁵⁾ 51-107...2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질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기본통칙을 통해 나름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통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표현 또한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실무적 판단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일부 의료기관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⁶⁾에 따른 질환, 국세청 자료, 언론 보도 등을 참고해 장애인증명서 발

3) 장애인 공제를 받는 사람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인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일반 진단서와 달리 세법상 요건이 명시된 별도 서식으로,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이 발급해준다. 한편,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자는 등록증 사본이나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4) [24 국감] 소득세법 상 ‘중증환자’ 기준 ‘의사마다 병원마다’ 차이…국세청 “기재부와 협의중”(2024-10), 세정일보, 한효정 기자

5) 국세청 기본통칙은 세법의 해석 및 적용 기준을 정리한 행정 해석 지침으로, 법령 문언만으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실무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발행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에서는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한다. 또한, 법원이 세법을 해석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의료비가 높은 특정 중증 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외래 진료 모두 기존 20~60% 수준에서 0~10% 수준으로

급 기준을 마련해왔다. 이로 인해 같은 상황에 처한 납세자임에도 병원에 따라 발급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반복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제도 전반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증명서 발급의 책임 역시 모호했다. 증명서에는 진료자와 발행자가 구분되어 기재돼 있기는 하나, 이는 문서 발급의 행정 책임을 분담하는 형식에 불과했다. 누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의료기관은 판단 책임을 회피하거나 발급을 제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일부 납세자는 과도한 소명 부담을 감당해야만 했다.

종합하면, 장애인 공제 대상자 중 하나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판단 기준과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과 적용상 편차를 낳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2월 해당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3. 장애인 공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미 분석

이번 개정에서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4호 관련 내용은 신설된 제3호로 옮겨졌다⁷⁾. 개정의 핵심 변화는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일부 질환이 공제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유연성을 유지했다. 둘째, 장애인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의료기관장이 판단하도록 법령에 명시했다. 이는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 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경감해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대상 질환과 적용 방식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이 기준에서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범위, 적용 기간, 등록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7) 제3호 조문은 대통령령 제17456호(2002년 1월 1일 시행)로 삭제된 이후 장기간 공백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다 이번 개정에서 기존 제4호에 포함되어 있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목이 이 조문에 새롭게 규정되었다.

첫째, 질환 요건 중 ‘희귀성난치질환’의 범위를 살펴보면,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을 따른다고 쓰여 있다. 해당 조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시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으로, 희귀질환(별표 4), 중증질환(별표 3), 중증난치질환(별표 4의2) 등 산정특례 대상 질환 목록을 참고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이 목록이 세법상 ‘희귀성난치질환등’의 실질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기준은 실무에서 오래전부터 널리 활용돼 왔다. 공식적인 규정이 없던 과거에도 일부 의료기관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정의된 ‘중증질환자등’의 범위를 참고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왔다⁸⁾. 국세청 역시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해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실무 관행이 제도화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외 질환 요건에는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이라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산정특례를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중증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장애인 공제 적용이 가능한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생활 요건과 관련해서는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라는 표현이 이번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법령에 명문화되었다. 이는 기존에 기본통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조되던 실무 기준이 법령으로 격상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둘째, 개정 시행령은 판단 주체를 개별 의사가 아닌 의료기관의 장으로 명시했다. 1995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⁹⁾라는 문구가 삭제된 이후에도, 의료기관은 관행적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책임을 떠맡아 왔다. 이번 개정은 사실상 비어 있던 법적 근거를 30년 만에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비로소 납세자는 장애인증명서를 법령에 근거해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게 되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발급 주체가 제도적으로 명확해진 만큼, 관행적으로 해오던 발급 기준을 보다 체계화하거나 내부 판단 구조를 정비할 이유가 생겼다. 즉, 이번 개정은 납세자에게 권리를, 의료기관에는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8)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중증질환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9) 1975년 장애인 공제가 처음 도입이 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구성돼 있었다. 그러다 2년 만에 해당 문구로 변경되었다.

4. 개정 시행령의 한계와 개선 방향

2025년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에 개선점이 남아있다.

(1) 질환 범위 기준의 불안전성과 행정 연계의 부재

질환 요건은 제도 운영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을 초래한 요소 중 하나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개정 시행령 ‘3호’에서 규정한 ‘희귀성난치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단 기준에 따라 공적 절차를 거쳐 등록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환군에 포함된 납세자는 장애인증명서를 받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¹⁰⁾ 등 납세자의 추가 부담이 여전히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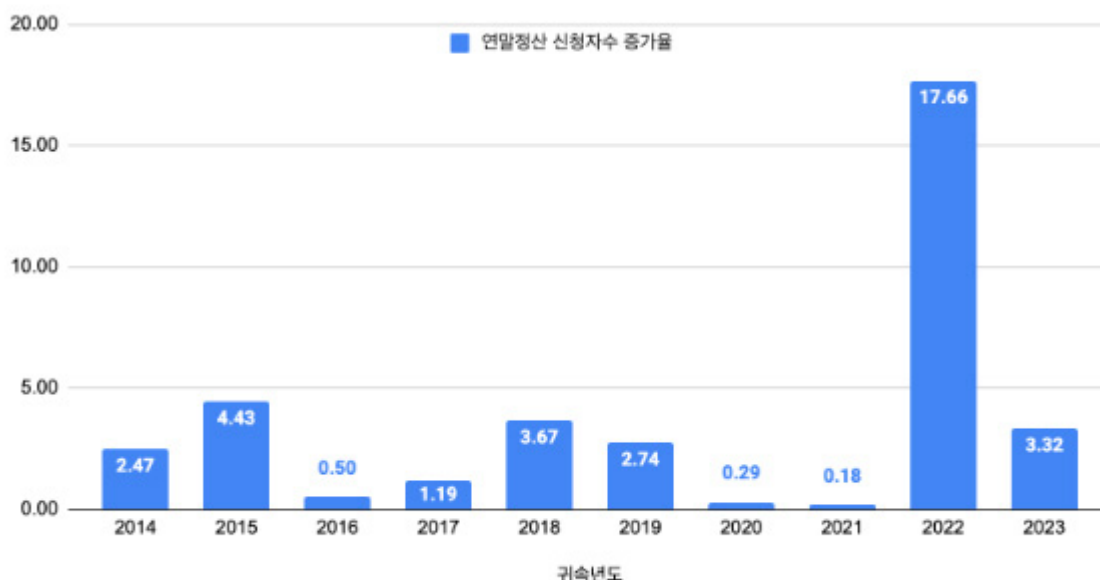
한편, 개정 조문에 포함된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이라는 문구는 산정특례 외 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조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은 저해되므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공제 적용 유형을 체계적으로 집계·분석할 수 있는 기반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국세청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장애인 공제자 수’만을 집계하고 있을 뿐, 법령상 공제 유형별 통계를 별도로 산출하지 않아 제도 개선을 위한 실증적 기초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정특례 질환군과의 행정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 질환’을 해석하는 명확한 기준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행정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희귀난치성질환등’에 해당하는 질환자에게 장애인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증명서에 발행자 날인란 하단 여백에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라는 문구를 부기하고, 장애 기간 항목에는 산정특례 적용 기간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이는 국세청이 과거 의료계에 발송한 공문에서 직접 요청한 실무 기준이기도 하다. 실제로 작동했던 행정 운영 사례였던 만큼, 이를 제도화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증명서 발급 비용은 1,000원이다.

더 나아가, 행정 시스템 연계도 고려해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의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연계되면서¹¹⁾, 장애인공제 신청자 증가율이 급증했다. 납세자의 서류 제출 부담만 줄었을 뿐인데도,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산정특례 등록자의 장애인증명서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동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를 기반으로 미신청자에게 안내하거나 신청을 유도한다면, 자동화의 행정적·경제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지 1】 장애인 소득공제 신청자수 증가율

한편,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은 실무 적용 편차가 크고 판단 기준이 유연한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행정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단순한 통계를 넘어 정책 평가와 제도 보완의 출발점을 확보할 수 있다.

공제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반의 중요성은 ‘비과세 식대’ 제도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1996년 처음 도입된 비과세 식대는 오랫동안 수혜 실태를 보여주는 기초 통계조차 없었다. 그런데,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¹²⁾ 비과세 식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재 의무가 신설되었다. 그 결과, 2023년에 이르러서야 전체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46.5%)가 해당 혜택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제도가 오래됐다고 해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11)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간소화자료 관련 절차(2023-01), 한국세정신문, 윤형하 기자

12)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01), 기획재정부

장애인 공제 역시 연간 수혜 인원이 약 200만 명¹³⁾에 이르고, 특히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적용 편차가 크고 제도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유형을 지급명세서에서 구분해 기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3호 항목의 적용 실태를 유형별로 구분해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분석 결과는 보다 현실적인 제도로 이어지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전체 장애인 공제 대상자 중 산정특례 질환자의 비중이 높다면, 자동 발급과 간소화자료 연계에만 집중해도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3호 항목 내 산정특례 외 질환자, 즉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에 해당하는 사례의 비중이 크다면, 해당 사례에 대해 보다 정교한 해석 기준과 판단 절차를 마련하는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주체와 운영 구조 간의 연계 미비

개정 시행령에서 판단 주체를 의료기관의 장으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형식적 책임 소재는 정비되었다. 그러나 그 판단이 잘 작동하는 데 필요한 해석 기준과 운영 체계는 여전히 부재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등급 판정과 등록 절차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1호와 2호 항목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세법상 장애인 범위		등급 (판정 기준) 분류	등록신청	진단(검사)	심의
1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자	보건 복지부	읍면동 주민센터	의료기관	국민연금 공단
2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국가보훈 처	관할보훈 청	지방보훈 청(보훈병 원)	보훈심사 위원회
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의료기관	-

13) 2023년 귀속년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소득공제를 신청한 인원 1,397,595명과 2023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장애인 소득공제를 신청한 인원은 636,434명을 합한 수치 기준이다. 이는 중복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합산 수치로,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도 동일하게 공제를 신청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표 1】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판정 기준 분류 및 등록신청,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정보¹⁴⁾(세부적인 적용 기준이나 절차는 다를 수 있음)

이러한 행정 공백은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다. 기관 간 혼선은 제도 개정 이전에도 지속되어 왔다. 과거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 요청에 따른 행정 혼선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실무 협조를 각각 요청한 바 있다.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관련 협조 요청

1. 평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대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 가.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동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호(과세표준 확정 신고 관련 서식) [제38호 서식]
3. 일부 요양기관의 안내로 소득세법 상 장애인의 범위에 속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문의가 우리 공단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필요한 ‘장애인증명서’는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요양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임을 귀 협회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

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이미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장 등에 보낸 공문 일부

14) 2022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위한 복지정보(2022-05),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장애인등록/장애정보 심사제도 페이지, 보건복지부



국 세 청

보다 나은 정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발급 협조 요청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협회에 감사 드립니다.
2.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도 2018년도부터 공제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각종 소득·세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될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기간은 장애인증명서 서식 '장애예상기간'에 기입하고,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임을 발행자 날인란 하단 여백에 부기

붙임 : 1. 장애인증명서 서식 1부.

2. 관참고자료(관련규정) 1부 끝.



【이미지 3】 국세청이 대한의사협회에 보낸 공문 일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해석 공백은 결국 의료기관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의학적 진단을 수행하는 기관일 뿐, 해당 질환이 세법상 공제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본래 국가가 책임져야 할 조세 행정의 영역이다. 이는 명백히 제도 해석의 책임 공백이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조세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각 기관의 역할을 구분하고 협조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 주체로서, 산정특례 질환 등 간접 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에 대한 해석 지침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 국세청은 실무 적용과 민원 대응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의료기관과 납세자가 참고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 및 사례 중심의 Q&A 자료를 마련하고, 질의응답 채널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법과 간접적으로 연동되는 건강보험 기준의 해석이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세 행정과의 협의 체계를 정례화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안내를 넘어, 의료기관이 보다 명확한 기준 하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5.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조항 정비

장애인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희귀성난치질환등’의 기준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별표를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도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도 이와 유사하다. 소득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령에서는 이를 다시 기획재정부령(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시행규칙에 이르러서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두 제도 모두 법령 자체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해당 고시를 참조하는 구조다.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제1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없이주기적인치료가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 제3호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 1)...10)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2항 제2호 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④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 3),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 4 (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보건복지부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4조 관련)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4조 관련)	관련)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제5조 관련)	[별표 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제5조 관련)	질환의 적용 범위

이러한 법령 체계상의 문제는 단순히 복잡한 정도를 넘어, ① 동일 개념이 제도별로 다른 법령 체계를 통해 연결되는 점, ② 의료비 세액공제에서의 중증질환자 등의 정의가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정의와 위임이 반복된다는 점, ③ 문구의 난해함으로 인해 납세자가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두 제도 모두 실질적인 정비가 필요한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위임 내용을 담고 있는 시행령 조항들은 시행규칙 제61조의4로 통합해 참조하도록 구조를 정리할 수 있다. 이때 각 시행령 조항에 중복되거나 간접적인 문구는 제거하고, 시행규칙 기준을 직접 명시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식은 제도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해석 경로를 줄여 실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이해도 역시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조항 정비 과정에서 현재 장애인 소득공제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결핵환자의 포함 여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결핵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기존 조항의 “이에 준하는 질병”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국세청도 관련 증명서 발급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 따라서 구조를 통합하면서 결핵을 명시적으로 포함해도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는다.

6. 마무리

2025년 시행령 개정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목의 적용 기준을 일정 부분 구조화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산정특례 등록 기준이 일부 반영되었고, 판단 주체가 ‘의료기관의 장’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형식적 틀은 이전보다 정비된 셈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 운영의 실질적 한계는 남아 있다. 산정특례 등록이라는 공적 판단 절차를 이미 거친 질환자조차, 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시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복수의 행정기관이 각기 다른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이를 조율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부의 조치를 제안한다.

우선 산정특례 질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 없이 장애인증명서를 자동으로 발급하고 이를 홈택스 간소화자료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수 있다. 한편, ‘이와 유사한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하는 사례는 국세청이 공제 유형별 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기준 정비 방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정비가 작동하려면 각 행정기관의 역할이 분명히 재정립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은 법령 정비와 제도 연계를 조율하고 세무 행정과 의료 행정 간 협력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또한,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를 확인하는 법령의 조문들의 복잡함을 개선하기 위해 조항을 정비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형식적 틀을 일정 부분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준과 운영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판단 책임만 의료기관에 부과하는 방식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이 지금 제시된 개선 과제를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기준과 운영 구조를 마련해나가길 기대한다.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토론

김 섣 택 회장
(한국납세자연맹)



토론문

김 선 택 회장 (한국납세자연맹)

1.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 제1항 3호의 개정 내용

입법예고 개정안	확정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59조의4제2항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토론문에서 ‘산정 특례자’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토론문에서 ‘주기적인 치료자’라 한다)

*개정법의 취지: 소득세법상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장애인의 범위를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명확히 함.

⇒ 산정특례자와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는 성격이 달라 구분하여 논한다.

2. ‘산정특례자’ 장애인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 내용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 희귀난치성 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이하 생략)

(2) 중증질환의 범위

산정특례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이다.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 진료 시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 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중증난치,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결핵, 잠복결핵감염이다. 2023년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등 42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되어 현재 희귀질환은 1,165개이고, 중증난치질환은 208개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158만 명(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누적 등록 현황)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고 있다.

산정특례 대상자는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질환에 따라 0~10%의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단, 비급여,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산정특례제도의 특례 기간은 최대 5년이나(결핵은 치료 종결 시까지) 만약 특례기간 내 완치되지 않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신청을 통해 특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¹⁾.

(3) 장애인증명서 이름의 낙인 효과 문제

가. 납세자연맹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 내용(2023.7월)

[설문조사] 장애인증명서 이름을 바꾸어주세요

납세자연맹은 “장애인 증명서”를 “(소득·세액공제용)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증명서”로 바꾸는 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법조문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납세자와 의사 모두의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원님께서 이 의견에 찬성하시는지, 혹은 다른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발췌

Q. 현재 “장애인증명서”를 “(소득·세액공제용)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증명서”로 변경하는데 찬성하시나요?

○ 찬성한다 ○ 반대한다

Q. 회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다른 좋은 명칭이 있다면 기재해주세요

나. 설문 결과

찬성 : 385명(83.3%) / 반대: 77명(16.6%)

다. 낙인효과에 대한 회원 의견

-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낙인찍히는 느낌을 최소화 하는 용어가 되면 좋겠습니다.
- 저도 전에 장애증명서를 제출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환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명칭 변경을 빨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에서 묵시적으로 차별하는 폭력적 단어입니다. 특히 어린이에게는 그 정도가 상상이상으로 심한 상황입니다. 그것도 세법에서까지 부당한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고 고쳐져야 할 대상이라 할 것입니다.
- 중증환자를 가족으로 둔 입장에서, 가족을 돌보는 지친 상황에서 발급받은 서류에 장애인증명서라는 문구는 마음을 더 아프게 하여 정신적으로 약해짐을 느꼈습니다.
- 제가 암환자로서 해당 내용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할때 조금 창피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 항시 치료를 요한다는 문구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업무 배정 할 때 언제 아플지 모르니 업무 배제나 축소 등 본인의 현재 몸상태와 무관하게 관리자나 인사권자들에게 고려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암환자라도 추적관찰만 하는 경우, 일상생활이 일반 비암환자와 동일하게 가능하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이라는 문구는 그 사람을 항상 아픈 사람으로 인식되게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장애인 증명서라는 문구보다 더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 저는 작년 갑상선암으로 수술 및 C73코드 받고 5년간 산정특례중입니다. 올 초 2022년 연말정산 위해 제출할 때 현재 수술과 추가 방사성 치료도 끝났지만 세법상으로 세액공제되는 서류라 이름이 이렇다고 변명을 다해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서류용으로 필요한 거면 장애인, 환자, 중증 등의 표현은 의사가 서류를 끊어 주는데 있어 꺼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장애인증명서 이름 변경

“장애인 증명서”를 ‘(소득·세액공제용)산정특례증명서’로 변경하는 것이 좋음

(5) 발급방법

- 1안: 수동 발급
- 2안: 병원에서 자동발급(종합병원은 무인발급기, 기타병원은 병원 ERP프로그램에서 발급)
- 3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 일괄 제출

⇒ 3안의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산정특례자인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게될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이 우려되므로 회사에서 이 내용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시행되어야 함

3.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의 장애인

(1) 종전과 비교

국세청 기본통칙51-107...2	소득세법시행령 제 107조 제1항 3호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난치질환등 또는 <u>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

(2) 해당 요건

법문상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함

첫째,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산정특례처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해당되는지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둘째,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판단 주체가 ‘의료기관의 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현재와 같이 담당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장애인증명서 이름 변경안

*아래 내용은 납세자연맹 회원들이 제시한 이름임

- (소득·세액공제용)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증명서
- (소득·세액공제용)항시치료 환자증명서
- 항시치료를 요하는 환자증명서
- 지속적 치료 요하는 환자 증명서
- 항시 치료 및 관리를 요하는 대상자 증명서
- 중증환자 증명서

※ 중증이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느껴짐으로 많은 회원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함

⇒ 설문조사는 시행령 개정전에 실시한 내용으로 개정후 조문내용을 반영하여 ‘(소득·세액공제용)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증명서’가 괜찮은 것으로 판단됨

(4) 발급방법

담당 의사의 판단을 거쳐 의료기관의 장이 수동으로 발급할 수밖에 없음

(5) 조문 개정안

산정특례대상자와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의 장애인증명 서식을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조문 변경하는 좋은 것으로 판단됨

현재	개정 의견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토론문에서 ‘산정 특례자’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토론문에서 ‘주기적인 치료자’라 한다)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라목 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토론

안기종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득세법상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환자를 위한 공제제도 개선방안

안 기 종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107조에 따라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과 같은 산정특례 등록 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1명당 연간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다. 개정 이전에는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포함되기 위한 질환 요건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불명확하게 규정해 자의적 해석이 빈번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적·행정적 판단이 쉽고 명확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인정되는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대상자를 좁혀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한 해당 환자들의 민원도 많았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질환 요건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로 규정해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으로 명확히 했다. 이러한 명시적인 질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든 질환을 포괄하는 질환 요건으로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생활 요건으로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인해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질환 요건과 판단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해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함으로써 의료현장의 혼선과 환자의 불편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발제자는 산정특례 등록이라는 공적 판단 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 없이 장애인 증명서가 자동 발급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와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국세청이 공제 유형별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관련 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하고, 장애인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의 복잡한 법령 구조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통해 중복 판단을 줄이고, 산정특례 등록 환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모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는 환자 관점에서 발제자의 개선방안 관련해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상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범위 관련해 보건복지부 고시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상의 산정특례 대상 질환과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럽다.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은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9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3호 라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란 〈암환자 및 중증화상환자,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 결핵질환자〉를 말한다. 이에 반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질환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잠복결핵감염, 중증화상, 중증치매〉를 말한다. 따라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외상, 잠복결핵감염, 중증치매’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에는 포함되지 않고,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반복하는 것으로써 이 경우에도 질환 요건과 생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추가로 판단할 필요 없이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다.

(포괄적 질환 요건의 판단기준) 소득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질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포함되면 〈의료기관의 장〉이 생활 요건으로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판단 시 장애인 증

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포괄적 질환 요건이 너무 추상적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해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높아 잦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는 국세청에서 포괄적 질환 요건을 충족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질환의 유형별 통계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당 환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 둘째,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는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 상이자와 동일하게 장애인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만, 장애인 증빙 방법과 국세청 간소화자료 연동에 있어서 불리하다.

(장애인 증빙 서류) 장애인 증빙 서류의 경우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원무 수납창구를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홈페이지나 모바일 의료기관 앱을 통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에 반해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는 별도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고 해당 등록증 사본이나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된 환자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산정특례 등록 여부만 확인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정특례 등록 여부 확인은 가능하지만,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목록 중 ‘산정특례 등록확인서’는 없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관련 질의에 대해 “국세청 연말정산 신고 시 산정특례 등록 환자들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면 추가로 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126으로 확인 바랍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등록확인서’ 발급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 연계)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는 2022년 귀속분부터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보유한 세법상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와 연계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는 아직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질환 요건이 명확한 중증질환 또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라도 세법상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자료가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자료와 연계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적·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은 점에서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가 263만 3,262명이다. 같은 기간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환자 수도 273만 2,041명으로 적지 않다. 국가로부터 이미 공적 판단 절차를 거친 산정특례 적용 환자들에게는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 상이자에 준해 소득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토론

한 민 희 팀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토론문

한민희 팀장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장애인 공제 현황

-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공제(장애인 추가공제)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현황】

구분(귀속)	본인공제인원	장애인공제인원*	증감율	비중
2019	19,070,498	1,144,308	2.7%	6.0%
2020	19,407,005	1,147,670	0.3%	5.9%
2021	19,904,138	1,149,666	0.2%	5.8%
2022	20,479,114	1,352,744	17.7%	6.6%
2023	20,789,197	1,397,595	3.3%	6.7%

* 전체 장애인공제인원으로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중증장애인 공제 인원은 확인 불가

□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 현황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의 경우 간소화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장이 발급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간소화 제공 어려움

구분	대상	증명서 발급기관	간소화자료 수집유무
세법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건복지부	○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국가보훈처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	X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의료기관, 지원센터	X

□ 주요 과제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국세청이 수집하여 간소화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3 개정 필요

제216조의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 ① 법 제16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란 제10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말한다.
1.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
 - 1의2. 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2.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른 보험료
 3. 법 제59조의4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른 의료비. 다만, 제118조의5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의료비는 제외한다.

- (의료기관 협조) 실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연말 업무 부담 증가 등으로 자료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있어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음

□ 향후 계획

- 소득세법 및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경우 국세청은 원활한 연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토론

신정선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장애인소득공제 관련 희귀난치질환자의 범위 명확화 등 개선 관련 검토

신 정 선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

□ 검토 배경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애인 소득공제 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운영 내용 공유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소득공제 개선 협조
 - ‘장애인공제 중 희귀난치질환자의 범위 명확화와 간소화서비스 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자 참석 요청’
 - ※ 장애인 소득공제 중 중증환자 요건의 적용 혼선과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한 토론회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안내

- (목적) 암 등 중증질환,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경감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필수의료 보장 강화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비용의 일부부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2024-275호, '24.12.27.)
- (대상)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 일부부담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
 - ※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고시에 정한 상황 발생 시 요양기관에서 적용

- **(지원내용)**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 … 20%~60% → 0~10%
 - 암 등 중증질환 5%, 희귀·중증난치질환 10%, 결핵·잠복결핵감염 0%
 - ※ 100분의100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2~3인실 입원료, 식대 등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한 경우 및 비급여 진료비 제외
- **(적용범위)**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 받은 진료비와 특례 대상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으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 경감
- **(등록 신청)** 고시 기준에 해당하여 등록하려는 사람은 담당의사 및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

□ 검토의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조 제3항〉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 · 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공단은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희귀·중증난치질환, 결핵 등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정보’를 요양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정보마당’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기관 장의 인정 여부 판단 시 활용
- ※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도, 조회일 기준으로 급여비 청구소멸시효(3년) 이내일 경우에는 진료일자 당시의 산정특례 정보 조회 가능

참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정보 요양기관 제공

□ 제공 정보 내용

○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할 경우 조회 가능하며,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에도, 조회일 기준으로 청구소멸시효(3년) 이내일 경우에는 진료일자 당시의 산정특례 정보 조회 가능

○ 질환별 제공 내용

- (공통) 특정기호, 등록번호, 등록일, 종료일
- ('암' 추가 제공) 상병기호, 상병일련번호, 접수구분
- ('중증화상' 추가 제공) 상병기호, 상병일련번호
- ('치매' 추가 제공) 상병기호, 상병일련번호, 차수시작일자, 차수종료일자, 기본 60일 사전승인 사용일수, 연장60일 사전승인 사용일수(단, 차수일자 및 사전승인 사용일수는 V810인 경우만 표출)

○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확인 시 표출 특정기호

구 분	특 정 기 호
암	V193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극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상세불명 희귀질환	V
결핵	V000, V206, V246
중증화상	V247, V248, V249, V250, V305, V306
중증치매	V800, V810
잠복결핵감염	V010